



문서번호	주택관리과-40540
결재일자	2014. 1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주택정비담당	주택관리과장	도시환경국장
장성희	오주환	이문종	12/10 김장수
협 조			



삼선동 무허가 건축물 철거 계획

2014. 12.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

삼선동 무허가 건축물 철거 계획

삼선초등학교 정문 근처 삼선동 3가 소재 무허가 건축물이 혐오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으니 정비를 요청한다는 민원이 있어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통학하는 초등학생과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 조치)
- 감사담당관-13837(2014.12.05.) 무허가건물 안전점검 결과 송부

II

무허가건물 현황

- 위 치 : 삼선동 3가 89-1
- 규 모 : 약 60 m^2 (토지면적)
- 지 목 : 도로 (서울특별시 소유)
- 설치구조 : 앵글기둥에 샷시 유리문과 합판 등으로 축조 되었음
- 사용용도 : 수년전 성명 미상의 노인이 재활용품 수집 및 수리 판매처로 사용 하였으나 노인 사망이후 방치된 상태임

III

민원내용

-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인 : 강**)
 - 2014.11.06. : 삼선동 3가 소재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아이들의 통학에 위험요소로 존재하며 통행인에게 장기간 혐오감을 주고 있고 야간에는 시민불안감과 범죄유발 가능성을 증대시켜 조속한 정비를 요청함.

- 현장포토 : ' 14.10.16, ' 14.11.06 (민원내용 상동)
- 성북구의회 송대식 구의원 : 안전진단 및 철거 검토 요청

IV

안전진단 및 법령검토

- 감사담당관 안전점검 결과 요지
 -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지반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무허가건물 철거 전·후 안전과 미관을 위한 헨스설치 등 대책이 필요
- 주거정비과 재개발 관련 법령 검토 결과(주거정비과-15164, 2014.12.08)
 -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따라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허가된 건축물(기존무허가건물 확인원 포함)이 아니기에 조합원이 아님.

V

철거 추진 계획

- 철거방법 : 철거 용역업체 선정 철거대행
- 철거면적 : 60m²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내역
 - 블록벽돌 철거 및 처리 : 약 4톤
 - 목재 등 : 약 1톤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소액)
- 소요예산 : 6,8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주택관리과, 주택건설및관리, 위법건축물의 체계적관리, 위법건축물정비,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 철거후 공원녹지과, 삼선동주민센터에서 꽃밭 조성 및 환경정비 등 실시

붙임 1) 철거대상 건축물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견적서 1부.